

한경훈 / 3월 / 기초GS+ / 3회										
반구분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실강+실영상반	515621	25	9	0	0	34	1	1.06%	4	94
실강+실영상반	515450	21	12	0	0	33	2	2.13%	5	
실강+실영상반	515457	20	12	0	0	32	3	3.19%	5	
실강+실영상반	515491	23	8	0	0	31	4	4.26%	4	
온라인첨삭반	515840	19	12	0	0	31	4	4.26%	4	
온라인첨삭반	516145	18	13	0	0	31	4	4.26%	5	
실강+실영상반	515580	21	9	0	0	30	7	7.45%	5	
실강+실영상반	515585	17	12	0	0	29	8	8.51%	4	
실강+실영상반	515601	24	5	0	0	29	8	8.51%	5	
실강+실영상반	515370	18	10	0	0	28	10	10.64%	4	
실강+실영상반	515393	17	11	0	0	28	10	10.64%	5	
실강+실영상반	515515	17	11	0	0	28	10	10.64%	5	
실강+실영상반	515567	20	8	0	0	28	10	10.64%	4	
실강+실영상반	515581	16	12	0	0	28	10	10.64%	5	
온라인첨삭반	515828	18	9	0	0	27	15	15.96%	5	
온라인첨삭반	516310	19	8	0	0	27	15	15.96%	5	
실강+실영상반	514114	14	12	0	0	26	17	18.09%	5	
실강+실영상반	515518	16	10	0	0	26	17	18.09%	5	
실강+실영상반	515913	17	9	0	0	26	17	18.09%	5	
실강+실영상반	516103	20	6	0	0	26	17	18.09%	5	
실강+실영상반	515462	15	10	0	0	25	21	22.34%	4	
실강+실영상반	515612	14	11	0	0	25	21	22.34%	3	
실강+실영상반	515733	20	5	0	0	25	21	22.34%	4	
온라인첨삭반	515505	15	10	0	0	25	21	22.34%	4	
실강+실영상반	516188	16	9	0	0	25	21	22.34%	5	
실강+실영상반	515366	17	7	0	0	24	26	27.66%	5	
실강+실영상반	515479	15	9	0	0	24	26	27.66%	4	
실강+실영상반	515578	22	2	0	0	24	26	27.66%	4	
실강+실영상반	515583	17	7	0	0	24	26	27.66%	5	
실강+실영상반	515665	24	0	0	0	24	26	27.66%	5	
실강+실영상반	515682	14	10	0	0	24	26	27.66%	4	
실강+실영상반	515736	19	5	0	0	24	26	27.66%	4	
온라인첨삭반	516278	17	7	0	0	24	26	27.66%	4	
실강+실영상반	515463	15	8	0	0	23	34	36.17%	5	
실강+실영상반	515631	18	5	0	0	23	34	36.17%	5	
실강+실영상반	515998	13	10	0	0	23	34	36.17%	4	
온라인첨삭반	517077	15	8	0	0	23	34	36.17%	4	
실강+실영상반	515492	18	4	0	0	22	38	40.43%	4	
실강+실영상반	515675	16	6	0	0	22	38	40.43%	5	
실강+실영상반	515729	13	9	0	0	22	38	40.43%	4	
실강+실영상반	515929	16	6	0	0	22	38	40.43%	5	
실강+실영상반	516087	14	8	0	0	22	38	40.43%	4	
온라인첨삭반	515656	13	9	0	0	22	38	40.43%	4	
온라인첨삭반	516167	14	8	0	0	22	38	40.43%	5	
실강+실영상반	515513	14	8	0	0	22	38	40.43%	5	
실강+실영상반	514532	17	4	0	0	21	46	48.94%	5	
실강+실영상반	515586	14	7	0	0	21	46	48.94%	5	
실강+실영상반	516191	15	6	0	0	21	46	48.94%	4	
실강+실영상반	515381	20	0	0	0	20	49	52.13%	5	
실강+실영상반	515385	13	7	0	0	20	49	52.13%	4	
실강+실영상반	515459	16	4	0	0	20	49	52.13%	5	
실강+실영상반	515461	16	4	0	0	20	49	52.13%	4	
실강+실영상반	515468	15	5	0	0	20	49	52.13%	4	
실강+실영상반	515584	13	7	0	0	20	49	52.13%	5	
실강+실영상반	515657	13	7	0	0	20	49	52.13%	4	
실강+실영상반	515844	17	3	0	0	20	49	52.13%	4	
실강+실영상반	516036	14	6	0	0	20	49	52.13%	5	
실강+실영상반	516170	14	6	0	0	20	49	52.13%	5	
실강+실영상반	515429	11	8	0	0	19	59	62.77%	5	
실강+실영상반	515446	19	0	0	0	19	59	62.77%	5	
실강+실영상반	515490	17	2	0	0	19	59	62.77%	4	
실강+실영상반	515577	17	2	0	0	19	59	62.77%	6	
실강+실영상반	515669	12	7	0	0	19	59	62.77%	5	
온라인첨삭반	516239	16	3	0	0	19	59	62.77%	5	
실강+실영상반	515369	13	5	0	0	18	65	69.15%	5	
실강+실영상반	515444	12	6	0	0	18	65	69.15%	5	
실강+실영상반	515594	14	4	0	0	18	65	69.15%	4	
실강+실영상반	515596	13	5	0	0	18	65	69.15%	4	
실강+실영상반	515652	11	7	0	0	18	65	69.15%	5	

실강+실영상반	516189	18	0	0	0	18	65	69.15%	5
실강+실영상반	515409	17	0	0	0	17	71	75.53%	5
실강+실영상반	515447	15	2	0	0	17	71	75.53%	4
실강+실영상반	516077	15	2	0	0	17	71	75.53%	4
실강+실영상반	515440	15	1	0	0	16	74	78.72%	4
실강+실영상반	515483	15	1	0	0	16	74	78.72%	4
실강+실영상반	515456	15	0	0	0	15	76	80.85%	5
실강+실영상반	515495	10	5	0	0	15	76	80.85%	5
실강+실영상반	515520	15	0	0	0	15	76	80.85%	5
실강+실영상반	515588	12	3	0	0	15	76	80.85%	4
실강+실영상반	515615	15	0	0	0	15	76	80.85%	5
온라인첨삭반	515616	14	0	0	0	14	81	86.17%	4
온라인첨삭반	515649	14	0	0	0	14	81	86.17%	4
실강+실영상반	516235	12	2	0	0	14	81	86.17%	4
실강+실영상반	516203	14	0	0	0	14	81	86.17%	4
온라인첨삭반	516199	11	3	0	0	14	81	86.17%	5
온라인첨삭반	516329	8	6	0	0	14	81	86.17%	4
실강+실영상반	515423	12	1	0	0	13	87	92.55%	5
실강+실영상반	515472	13	0	0	0	13	87	92.55%	5
실강+실영상반	515466	12	0	0	0	12	89	94.68%	4
실강+실영상반	515690	8	4	0	0	12	89	94.68%	4
실강+실영상반	516119	8	4	0	0	12	89	94.68%	5
실강+실영상반	515355	8	3	0	0	11	92	97.87%	4
실강+실영상반	515482	0	11	0	0	11	92	97.87%	5
실강+실영상반	516944	6	4	0	0	10	94	100.00%	4
실강+실영상반	515388	0	0	0	0	0	95	101.06%	#DIV/0!
실강+실영상반	515448	0	0	0	0	0	95	101.06%	#DIV/0!
실강+실영상반	515469	0	0	0	0	0	95	101.06%	#DIV/0!
실강+실영상반	515487	0	0	0	0	0	95	101.06%	#DIV/0!
실강+실영상반	515489	0	0	0	0	0	95	101.06%	#DIV/0!
실강+실영상반	515602	0	0	0	0	0	95	101.06%	#DIV/0!
실강+실영상반	515613	0	0	0	0	0	95	101.06%	#DIV/0!
실강+실영상반	515640	0	0	0	0	0	95	101.06%	#DIV/0!
실강+실영상반	515645	0	0	0	0	0	95	101.06%	#DIV/0!
실강+실영상반	515982	0	0	0	0	0	95	101.06%	#DIV/0!
실강+실영상반	516047	0	0	0	0	0	95	101.06%	#DIV/0!
실강+실영상반	516078	0	0	0	0	0	95	101.06%	#DIV/0!
온라인첨삭반	515724	0	0	0	0	0	95	101.06%	#DIV/0!
온라인첨삭반	516140	0	0	0	0	0	95	101.06%	#DIV/0!

한경훈/3월/기초GS Plus/3회/1번	채점자 김시연
-------------------------------	--------------------------

1. 전반적인 총평

아무래도 기초 GS이다보니 답안을 처음 작성하시는 것 같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답안지의 기초적인 작성방법이 아직은 낯설으실 수 있으시나, 강사님 답안이나 모범답안 등을 참고하셔서 기본적인 답안 작성 틀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표법 출제 경향상 단순한 정의를 묻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 되는 데, 이에 대한 대비 연습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강사님의 모범 답안과 다른 내용이라도 설문의 취지와 부합되면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조문이나 판례가 들어가있지 않거나, 판례를 잘못 이해하여 기재한 듯한 경우에는, 양이 많더라도 답안지의 인상이 안좋아짐을 고려하여 점수를 낮게 부여하였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1)

상표와 상품의 정의에 대하여 6점을 채우기 어려우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페이지를 다 채우지 못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설문(3)에서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약술하라는 문제가 나오므로, 설문(1)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판례나 정의를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뒤에 쓸말이 없어져요..

동일한 문제 내에서는 같은 판례를 반복해서 적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또한, 설문(1)에 기재한 후 설문(3)에서 "설문(1)에 기재한 사항과 동일"이라고만 적어주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되시고, 최대한 목차 짜실 때 내용 고려해서 어떤 설문에 어떤 사항을 기재할지 구상해주세요.

[2] 설문(2)

①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는 판례와

②"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에 대한 판례는

특히 판례 원문에 가깝게 최대한 많이 외워서 답안지에 현출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답을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따라 답안의 인상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3] 설문(3)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9점짜리 단문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9점 분량을 채우지 못하셨습니다.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판례를 적으신 경우 최대한 점수를 드렸습니다.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 그 광고매체 물품 자체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를 통한 광고 행위가 어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
한 광고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는 2조1항11호 다목
의 광고행위로서의 상표적 사용이 인정된다는 법리는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해당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답이 제대로 기재하신 분에게 높은 점수 부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 2조 1항 11호의 가,나,다목에 대하여 각각 가,나에는 해당되지 않고,
다목에는 해당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출해주시면 더더욱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소결

기초GS를 처음 작성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분량을 채우지 못하셨고 논점도
캐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제대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낙담하지마시고 기초
GS에서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느낌을 배우고, 중요 논점들을 공부해간다는 느낌으로 접
근해주세요.

한경훈/3월/기초GS Plus/3회/2번	채점자 김시연
1. 전반적인 총평	
<p>많은 분들이 끝까지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셨습니다. 시간 배분에 실패하셔서 아예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도 매우 많았습니다.</p> <p>2차 답안지를 처음 작성할 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근차근, 시간과 분량을 맞춰간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GS작성에 임해주시면 한달 후쯤에는 답안 작성 실력이 확 느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p> <p>디자인과 상표의 경합에 관한 리딩케이스이지만, 설문이 전반적으로 까다로워 무엇을 묻는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셨을것이라 생각됩니다.</p>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p>[1] 설문(1)</p> <p>①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 ②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 위 두 판례는 꼭 써주셔야 하고, 두 판례의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목차를 나눠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점이 8점이기에, 상표적 사용 판단기준, 의미, 검토 등 추가 내용 필수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8점의 절대적 분량 (1페이지 1/3)은 꼭 채워주세요.</p>	
<p>[2] 설문(2)</p> <p>해당 설문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을이 사용하고 있는 격자무늬가 디자인적 기능뿐만 아니라 출처표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는 점에 대하여 서술하여야 합니다. 설문에서 묻는 바만을 작성하셔야합니다. 침해 판단 여부는 문제되고 있지 않으니 침해여부는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p>	
<p>[3] 설문(3)</p> <p>하나의 상품에 동시에 여러개의 상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례를 적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p>	

'종이 태그'에서 힌트를 얻어 직물에 관한 판례를 적어주신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종이 태그'처럼 실제 판례 사안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에는,
가능하면 해당 판례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개의 상표가 경합할 수 있다는 답안도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3. 소결

답안지 1페이지를 다 채울 경우 6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배점당 절대적인 분량은 꼭 채
워주셔야 합니다.
아직 분량을 제시간 안에 다 채우시는 것은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배점 분량 고려해서 많이 작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문제 1] (상표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

I. ~~특허설문(1)~~

1. 상표의 정의

(1) 법고지항 등

상표법상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2) 개방적 정의 - 2016. 9. 1 개정법. 「표장」의 의미

법고지항 등은 상표법상 보호법의 ~~상표~~ 기능은 발휘하는 '표장'을 '상표'라고 정의한 바, 표장은 종하나의 기호문자·도형 등 그 표호방식과 상관없이 상표의 기능을 충족할 표시하기 위해 나타내는 모든 표시라고 규정한다.

이는 2016년 시행 개정법에서 개방적으로 규정하였다.

(3) 소고

따라서, 상표법상 '상표'란 자타상공상별기능 등 기능은 ~~발휘하기 위한 모든 표시라고 정의된다.~~

2. '상표'의 정의

(1) 판례

상표법은 상표법상 상품이 대하여 판례하고 있지 않은 바, 판례 및 심사기준은 "상품이란 그 자체가 판매기지를 가지고 독립된 의사기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라고 한다.

(2) ~~법고지항~~ 상법으로

상표법상 상품이 되기 위해선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예외

교환가치성 유상증, 양산증 등을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된다.

(3) 오류

상표법상 상표이면, 단업방지의 이바지한다는 법목적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법 2조 1항 1호는 상표가
상표가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이하 설문이며
각각의 사용이 상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인지 살펴보자.

II. 설문 (2)

1. 문제의 흐름

제1항 '우리할매떡볶이' (이하 상표 X)를 주제 음식물인
떡볶이와 서비스인 운동용에 대하여 등록 받을 바
떡볶이의 판매행위와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법 2조 1항 각 목의 상표의 하위인가 해당하는지 살핀다.

2. 떡볶이에 대한 사용인지 여부

(1) 음식물이 상표의 해당하는지
판례는 음식물을 유통상과 양산상이 ~~되어~~ 상표상으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오류

음식물인 떡볶이는 상표법상 상표의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떡볶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어 법 2조 1항의 사용행위로 하겠다는 학설

여기까

3. 띄ぶり이 판매시 제공되는 접시에 상표를 표시할 것이

서비스에 대한 사용인지 - 증명

(1) 서비스 ~~서비스~~의 사용하는지에 대한 판례

상표법상 상품이 서비스로 등록되는 바, (법률방문(로펌))

판례는 서비스의 사용이란, ① 서비스의 광고등에 상표를 표시

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이거나 ② 서비스제공자 수요자의

이용에 참여하는 순간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제공~~ 수요자의

온전히 상표를 표시하게 하거나, ③ 그리고 수요자 이용

참여하는 순간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혹은 서비스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2) ~~제공~~ 판례

상 띄ぶり의 절정으로 등장하여는 서비스를 제공 시 사용자

~~수요자~~ (2가)의 아 접시등의 상표를 표시한 행위는

서비스 (운영업) 제공시 수요자 (2가)의 이용 (용역을 받고

상호를 알게 되거나)에 제공하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4자는 수요자 이용에 참여하는 순간 ~~마련~~ 접시와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이용해 운영 중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대상으로, 접시와 상표를 표시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는 사용이

판시된다.

교, 실무(3)

1. 상표의 사용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행위에 대하여 법22(항)(호)로
규정하였다.

(1) 표시행위 (법22(항)(호) 가목)

- ① 상표 또는 상표의 표장이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법22(항)에서도 표시행위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데, 비전통표장이 표시하거나 전기통신로
- (2) 유통행위

① 상표 또는 상표의 표장이 상표를 표시한 것을 악도
인정하거나 전기통신로 통하여 제고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 등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2022년 개정법에서는 디지털상표의 유통이 빈번한
실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기통신로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행위로 상표법상 행위의 일태양으로 추가하였다.

(2) 랑고행위

① 법22(항)(호)로 다른 랑고행위에 대하여 상의하고 있다.
상표에 관한 랑고등의 상표를 표시하는 전시하거나
달리 알리는 행위로 상표의 사용이 아니된다

② 최근 알려진 법22(항)(호)로 다른 랑고의 달리 알리는 행위
는 거래선주들이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일반공중이
독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고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표가 표시된 거래선주들이 일반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넣었다면 보관이라는 행위가 해당한다고 봄다.

(4) 소결

법 22(항1)은 가.나목은 상표가 '상품의' 사용된 것을 전제하고 있는 바, 그이 사용 등을 나누준 행위가 상품의 사용 ~~방법~~에 해당하여서는 사용 ~~방법~~이 상정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사용된다.

2. 사용 ~~방법~~이 상표법상 사용인지 - 부정

(1) 사용 ~~방법~~의 정의

사용 ~~방법~~이란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목적으로 나누주는 운동을 의미한다.

(2) 사용 ~~방법~~이 상표법상 사용인지

판례는 사용 ~~방법~~과 같은 광고 매체가 되는 운동을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고안 기체를 가지고 독립된 사용기체의 대상이 되는 흔동이라 할 수 없어 상표법상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다.

(3) 소결

따라서 2의 제3항 사용 ~~방법~~은 상표법상 사용이 아니다.

3. 2의 사용 ~~방법~~ 배포하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인지 - 부정

(1) 판례

판례는 ① 광고 매체가 되는 운동을 상표법상 사용이 아님으로 이러한 사용 ~~방법~~이 상표를 표시한 행위로 법 22(6)에 내용이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사용목

③ 다만, 상품이 표시된 사용이외에 다른 도움이나
문구에 의해 광고하는가 사용할여지가 없도록 했다.

(3) 결론

그의 사용 ~~방법~~ ~~수단~~는 상표법 제40조
상표를 표시하고 유통한게 아님을 상표의 사용이라
할수 없다. 다만 '유튜버이거나 전문가'로
문구와 다른 차이가 있다면 띄어쓰기나 띄어쓰기 전문
으로 광고하는가 사용할여지가 있다. [증]

(문제2)

I. 원문(1)

1. 상표로써 사용의 의미

~~상표가 상표로써 사용된다는 의미는 형식적으로~~
~~법률상 (1) 각목의 하위에 해당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표의 기능~~ ~~해당하기능~~ 상표의 기능이 반영되는
사용이라고 한다.

2. 디자인의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1) 문전서 | 디자인 ~~작으로만~~ 사용된다.

판례는 ~~이~~ 상표가 ~~유사하다~~ 하려나도, 그だけ
사용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해당성을 ~~기준~~ 사용이 아니라 문전서 디자인 ~~작으로만~~
사용되는 등 ~~이~~ ~~인식할수~~ 없다는,



2276년 사용6135는 칭해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디자인(이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디자인)

다면 딸리는 딸리와 사용하는 배터리-선택적 관례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으로서 사용된 것이라 하려나마
존재로서는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이론은
사용도 선택으로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3. (3) 서양. 사용

여기 등록 상표 X는 특특한 디자인의 특징을 그 구역으로 한다
하지만, 수요자는 그 특징을 존재로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여의 디자인과 같은 한계-선택으로서의
사용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실물(2) (실물과 대비 먼저 기준)

1. 문제의 흐름

2017년에 하는 낭방복에 블루레이티드가 붙어있고
블루레이디A가 있는데 앤디디A로 인해 낭방복의
존재를 알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자

2. 상표 A를 어느정도에 대한 사용으로 인식하는지

(1) 딸리는 딸리와 상동의 등이상의 상표가 디자인
있을 때 ~~여전히~~ 딸리 자체로는 해석으로 ② 블루레이
티드에 딸리와 상동하는 것으로 소재에 대한
존재로서는 된다고 하였다.

(2) 결론

- ① 하나의 사용처에 주체가 들이거나 둘 이상으로 있으므로, 주체들은 여전히 상대에게 물려주거나 서초의 주체부분 등을 출처로 사용하는 일상화 것이다.
- ② 별개로 상대 A는 그 위치와 대처방법 등에 따라 서초의 주체부분에 대한 출처로서의 사용은 ~~제한적이다~~

II. 실용(?) 예비법

1. 문제의 주제, 사건의 주제

- ① 현재 주제는 주체부분의 주제에 대한 바, 즉 서초의 주체부분의 용도와 유사하다.
- ② 비록 바탕색, 선의 굵기 등 차이가 있지만 주요부분은 서초부분을 거래할 때 의뢰인 주체인 [당사]로 입장은 두고 거래하지, 이러한 세세한 차이는 아주 적어 차이로 판단하기 어렵다.

- ③ 그동안 X가 [당사] 출처로서 사용되는 양상을 알면서도 이와 유사한 데를 사용하고 있는 바,

- ④ 이러한 행동은 본인 신용에 도움을 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한 쪽으로 자본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⑤ 그의 주체부분 사용은 ~~당사~~ 주체부분에 대한 권리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된 것이 아니면 출처로서 사용하는 ~~수단~~이

[당사] 후에는 출처를 ~~당사~~로 표기하는 것이다. [문]

늦었지만, 잘 왔어요! 잘 왔어요!

[문제 1]

I. 상표(1)

X

1. 상표의 정의

(1) 상표의 정의 (法 23. 1항) 6)

본래에서 '상표'라며 상표와 같은 뜻을
구별하기 위해 '상표는' 꽝'이라 정의함.

(2) 상표의 정의 (제 13)

~~(2)에서 우울한.~~

(3) 각자 상표 사용하는' 의미 (제 13)

상표법은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여 상표권
의 이용과 상호를 보호하고 하며, 상표
본래의 기능을 가진 상표는 사용하는 가능성이 한.

(4) '상표는 꽝'의 의미

'상표'는 꽝'이다. '꽝'은 기준으로서 표현방식
에 상표의 상호를 표기하는데 사용하는 꽝

이다 (法 23. 1항 8)

2. 상표의 정의

(1) 법 23은 13이

서의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본래의 상표는 정의하기 어렵고.

(2) 쇠약

상품이란 고된 기관성을 갖는 주제적인 상기



의 특징이라 한

(3) 삼가기론

상표는 고별기호성, 독립성 유동성, 운동성, 양
상성을 가지며, 독립성은 상표의 ~~특수성~~으로 한

II. 사용(2)

1. 서비스의 정의 (제1항)

~~구별적~~ 거래상이 되며, 대상의 이용을 위한
용역으로, 제조와 함께, 제공하는 부수적인 것
은 아래와 같다.

2. 사용'의 정의

(1) 형식적 사용(法理使用)

상표법 23항 1호와 23항 2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표지, 유형, 광고행위가 있다.

(2) 실질적 사용(制使用)

클리어런스상, 즉 상표의 기능을 발휘하는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

3. 「록아이의 판매'가 '서비스'에 사용인지 여부

(1) 판매의 정의

「록아이의 판매」가 「록아이에 사용되는 「운영업」」
에 사용인지에 따라, ~~제3항 제1호~~ 제3항 제2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놓려진다.

록아이의
운영업

(2) 상표의 사용 (제23 항 11호)

상표에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유동하는 경우,

상표를 표시하는 이전 여권-수사에 표시되고 있어
는 경우가 있음.

(3) '서비스'의 사용 (제13)

서비스를 광고 매체가 하는 블로그에 표시하고 보리

알리는 것 손 아니면 서비스에 이용되는 블로그

예. 상품을 표시하거나 그 블로그를 표시하는

경우 그 또한 '서비스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음.

(4) 사용

① ~~제23~~ 브이를 판매하고, 이는 그 자체로 충분히
여러가지에 '유동상' '양진상' 없라고 볼 수 있어

~~제23~~ 브이'라는 상품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제23, 고객을 위해, 통장으로 거래되어,

'브이'의 '제23'인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보기.

~~제23~~ 가능하다.

4. ~~제23~~

'서비스'의 사용.

III. 결론 (3)

1. 상표의 사용

10



(1) ~~상표 사용~~ (제23 10월 1일, 2항 제1호)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사용이 해당하는 경우 상표의 사용으로 본다.

(2) ~~설명적 사용~~ (제41조)

상표가 상품에 표시되었을 때의 상표

설명적 사용은, 출판권 사용으로서, 표시된 경우 대신 경우,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3) 구체적 예시 (제41조)

설명적 사용이나, 지역적 사용, 가능을 보여주기 위한 사용이나,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 등에 대하여, 상표의 설명적 사용이 출판권 사용을 뛰어넘거나 상표의 사용을 뛰어넘는다.

2. 광고와 표지·주총장부의 차이점

상표법에서, '표지·주총장부'는 상표 또는 상표의 표장에 표시하거나, 이를 표지·주총장부로 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고의 경우 상표에 표시 상표의 표지

에 표시하고 노획이 있고, 광고 자체가 표지

표지에 표시하고 노획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3. 상표를 나누는 원칙 상표의 사용인지 아닌지

① ~~상표를 거래장에서 유동할 가능성이 있는~~

이라고 하여 유동성을 놓친바, 이는

상표라고 봐 어렵다.

② 나아가 '우리할배 떡볶이'는 서비스(역
별이 판매업)의 상표를 하고 있고, 떡볶이
판매업의 '상표의 사용'은 서비스에 이용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거나, 상호 인식하는 것 또는
광고가 되는 곳(예. 가은풀)에 표시하고
보리 알라는 것(예. 향인에게 광고가 되는 매체)
나누어 쓸 것)이다.

③ 따라서 '상표를 내는 곳' '상표'을
상표로 봄 '우리할배 떡볶이'를 표시하거나 이를
광고한다고 봐 어렵고, 오히려 상표를
광고 배제가 되는 물품으로 봄 '떡볶이 판매업'
을 광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떡볶이 판매
업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수결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

문제 2)

J. A (1)

1) 상표34의 사용(상표) 판정(제1)

상표34 사용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 상표가 지닌 관념 Ⅱ) 상표가 지닌 관념과 상품
과의 관계 Ⅲ) 등록상표의 주지 지역성 Ⅳ)
상표의 사용량 Ⅴ) 사용 경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상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 판단해야 한다.

2. '디자인'이 상표로 사용될 때의 경우 (제3항)
디자인과는 상품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디자인
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 기능으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주로 디자인으로 사용되
다면, 이는 상표로 사용이 어렵다.

3. 접두어
상당수 대, 디자인과 상표는 모두 상품에 표
시될 수 있어 보통 상호와 일정에서 혼동될 수
있으나 상표의 사용량 등이 모조리 디자인과
사용된다면 상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1. 디자인이 상품에 적용될 때 Ⅰ) 원주자체
상표가 지닌 관념, Ⅱ) 상표과의 관계 Ⅲ)
등록상표의 주지 지역성 Ⅳ) 디자인이 어떻게
상품에 적용되는지 Ⅴ)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II. A는 (X)

1.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 (제1항)

디자인과 상표는 법적, 선택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디자인의 형상 자체가 상표의 본래적인 특성으로서 기능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

2. 논거.

① A의 상표 X는 물리적인 주체 상표이다.

② 일반 관객들은 "X를 보고 A의 출처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③ 예. 중국에서 X가 사용되는 상표가 종이로
남방서예에 X를 사용한다.

④ X와 Y는 서로 다른 특이 기능의 물질적 표현
而已. 비록 서로 다른 세세한 차이가 있다.

⑤ 그러나 예술작가는 통상적으로 사용한 이미지
전체적으로 주목하는 느낌을 끌어 관람비 있다.

⑥ X와 Y는 남방서예(예술작가)를 관찰하며,
전체적으로 주목하는.

⑦ 예술작가는 형태는 X의 형태의 유사하다.

⑧ 예술작가의 경우 A의 중국 상표를 알
것으로 여기며, X 상표가 주의 대상이기에
주의력을 기울여 더욱 주목 한다.



- ① 그에 따른 X를 상상하세요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여기 X를 통해 있는 향법적 전용에 편승하여
보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은 아니며 충분합니다.
- ② 상화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한 것입니다.

Ⅱ ③

1. 환승품과 품목의 관계 (제) ABD
- ① 품목에 상표가 표시되어 원상품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 그 상표가 부품에 사용되어 품목
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원상품에 사용되어 품
목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상표로서 사용되는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법적 객관

- ① X상상하세요에 '클라우드'가 포함되어 A입니다.
가 부록된 것이 X상상하세요의 상표로서 사용
되었던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 ② 이는 X상상하세요에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객관
적이고 X상상하세요의 상표로서 사용되는
지 여부로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 ③ 반대로 같은 A가 X상상하세요가 아닌 B의
제품을 위에 사용한 경우고, 결과적으로
서로의 권리로서 가능하고 객관이 끝나는 수준입니다.

누군가 상상하세요라고
기록상 상상하세요라고!